

# 클레임보상협약서

20 . . .

갑 : 주식회사 퓨트로닉  
을 :

# 클레임보상협약서

주식회사 퓨트로닉를 "갑"이라 칭하며, \_\_\_\_\_ 을 "을"이라 칭하고 "을"이 "갑"에게 납품한 부품 및 그 부품으로 인하여 관련부품에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크레임 보상협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클레임의 정의

1. 본 협약에서 「클레임」이라 함은 「"을"의 납품 완료 시점부터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 때까지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부품의 불량 또는 "갑"이 출고 후 보증수리의 대상이 된 납입부품 및 그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통상 유발 될 수 있는 타부품에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갑"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변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레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라인크레임 : "을"의 납품완료 시점부터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 때 까지 사이에 발생한 크레임.

나. 내수클레임: 제품이 내수용으로 출고되어 "갑"이 고객에게 보증한 기간내에 발생한 클레임.

다. 수출클레임 : 제품이 수출용으로 선적된 이후부터 "갑"이 고객에게 보증한 기간이내에 발생한 클레임.

라. 보수용부품클레임 : 보수용으로 납품된 부품에 대해 "갑"이 고객에게 보증한 기간이내에 발생한 클레임.

3. 본 협약에서 「납입부품」은 「"을"이 "갑"에게 납품한 부품」을, 「부수부품」은 「납입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부품」을, 「클레임부품」은 「클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부품 및 부수부품」을 뜻한다.

## 제 2 조 보상책임

"을"은 당해 클레임의 발생이 "을"에게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며, 결함으로 야기되는 만·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 3 조 클레임보상 책임기간

1. "을"은 "갑"이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 보증하는 기간까지 납입부품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2. "갑"이 고객에게 약속하는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제반법규와 경쟁사의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갑"의 판매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3. 상기 1,2항 이외의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대한 「크레임 보상 책임기간」은 별첨과 같다.

## 제 4 조 클레임의 판정

1. "갑"은 클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부품에 원인이 있는지를 판정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클레임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갑"의 판매대리인 및 "갑"이 지정한 자가 "갑"을 대신하여 판정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클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 기간중 "갑"에게 "을"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갑"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갑"은 "을"을 구속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제 5 조 클레임의 통지

"갑"은 클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한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 제 6 조 클레임부품의 처리

1. "을"은 클레임 보상청구에 대한 "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클레임 부품을 인수한다.

단, 클레임부품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갑"은 "을"의 비용과 위험 부담하에서 클레임부품의 반환에 협조한다.

2. 클레임부품을 회수하여 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레임부품의 가치보다 클 경우 또는 소정 기일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한 후, 임의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클레임부품을 "갑"의 동의 없이는 재사용 할 수 없다.

## 제 7 조 보상방법

1. 라인클레임의 경우 "갑"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보상방법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며 "을"은 "갑"이 선정한 보상방법에 의거 "갑"에게 보상한다.

### 가. 대체납품

"을"은 클레임부품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 나. 수리비

"을"은 "갑"이 클레임부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클레임부품을 수리시키는 경우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 하여금 "갑"의 사업장 내·외에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클레임부품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다. 기타 보상

"을"은 "을"의 클레임부품에 기인한 부수고장품의 보수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비용 일체에 대한 "갑"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한다.

2. 내수클레임, 수출클레임, 보수용부품 클레임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라인클레임을 제외한 책임보상기간 이내에 모든 클레임은 이에 준한다.

### 가. 부품비

"을"은 클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클레임부품 및 부수 고장품의 금액 및 소정관리비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나. 수리비

"을"은 클레임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일체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다. 기타보상

"을"은 클레임부품 및 부수고장품의 수리에 필요

한 일체의 경비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클레임의 경우 부품송부방법은 항공수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송부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통관비등 부대경비 일체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제 8 조 보상액 산출기준

"을"은 "을"이 납품한 부품의 클레임 발생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나 "갑"이 고객 혹은 "갑"의 판매 대리인에게 행한 수리 또는 배상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보상해야 하며 별첨산출기준에 의한다.

단, "갑"이 고객에 대해 현금으로 배상한 경우이거나 "갑"이 지정한 자가 "갑"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수리를 하여 그 비용을 현금으로 배상한 경우에는 "갑"이 고객 혹은 수리업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 제 9 조 보상금액 지불방법

1. "갑"은 클레임 보상금액을 매주 혹은 매월단위로 집계하여 그 내역과 함께 "을"에게 통보한다. "갑"은 "을"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클레임 보상액을 상계하며 "을"의 채권이 없는 경우 차기 "을"의 납품대금과 상계하거나 "을"에게 보상금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10 조 증빙자료의 보관

"갑"은 "을"에 대한 클레임 보상청구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조 협의

본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없는 한 기본거래협약서를 따르며 기본거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12 조 협약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하며, 협약만료 2개월전 까지 협약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통지가 타방에 도달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 본 협약의 종료 후라도 "을"이 납품한 부품이 제3조에 정한 보상책임 기간이내에 있을 경우, "을"은 본 협약에 따른 클레임 보상책임을 진다.

본 협약을 보증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13번길 66-21번지  
회 사 명 : 주식회사 퓨트로닉  
대표이사 : 고 진 호, 안 중 기 (인)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 클레임보상책임기간

\* 출고일 기준 : 차량의 경우 시판용은 "갑"이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 일자, 수출용은 DEALER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 일자이며, 부품의 경우 고객에게 인계한 일자

\* 정기 보상책임기간중 수출클레임(수출용)에 대한 보상책임기간은 협약서 "제1조 2항 다" 및 "제3조 2항"에 의거 "갑"이 고객에게 보증한 기간(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으로 한다

순위	부품별구분	보증기간
1	일반부품 POWER TRAIN관련부품	클레임보상책임 기간은 다음 각항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차량출고후 36개월 또는 납품후 42개월 2. 주행거리 100,000Km  단, 냉난방장치 구성부품은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출고후 24개월로 한다.
2	EMISSION관련부품 (배출가스 상지 구성부품)	클레임보상책임 기간은 다음 각항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차량출고후 60개월 또는 납품후 66개월 2. 주행거리 100,000Km
3	부식관련부품	주행거리 관계없이 출고후 72개월 또는 납품후 78개월
4	기타	소모성부품(SPARE-PARTS)은 "갑"의 품질보증 정책에 의거 고객에게 보증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 구분되지 않은 기타품목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를 후 결정

## 보상액 산출기준

클레임 종류	비용 구분	보 상 액 산 출 방 법	비 고
라인 클레임	재 료 비	실재료비 손실금액	1. 라인 중단시는 기본거래 협약서 제8조 3항에 의거 별도보상 2. 『부수부품』의 보상액 산출방법도 『납입부품』 의 경우와 동일함
	노 무 비	1.수정 및교 환작업에 투입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2.해당클레임 처리에 소요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관 리 비	재료비 + 노무비의 10%	
	부 대 비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 및 기타 손해액	
내수 클레임	고객 보상비	해당문제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처리된 금액	1. 단, 대리점 및 정비처에 서 수리한 경우는 "값" 의 실지급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 『부수부품』의 보상액 산출방법도 『납입부품』 의 경우와 동일함
	재 료 비	고객클레임에 포함되지않은 재료비 손실금액	
	노 무 비	1.수정 및교 환작업에 투입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2.해당클레임 처리에 소요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관 리 비	재료비 + 노무비의 10%	
	부 대 비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 및 기타 손해액 (포장비,운송비,통관비 등을 포함한다)	
수출 클레임	고객 보상비	해당문제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처리된 금액	1. 『부수부품』의 보상액 산출방법도 『납입부품』 의 경우와 동일함
	재 료 비	고객클레임에 포함되지않은 재료비 손실금액	
	노 무 비	1.수정 및교 환작업에 투입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2.해당클레임 처리에 소요된 M/H×해당년도 예산임을	
	관 리 비	재료비 + 노무비의 10%	
	부 대 비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 및 기타 손해액 (포장비,운송비,통관비 등을 포함한다)	
보 수 용 부품 클레임		시판 클레임 및 수출 클레임에 준함	